

「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이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)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
- 3) 멘토링 및 교육지원, 벤처투자협의회 운영
- 4)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·변경·해약
- 5)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·관리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1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,2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1,200	240	120	84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 :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기술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기존 기업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멘토링 및 사업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동의안에 명시된 창업기업 발굴, 멘토링 및 교육 지원, 사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·관리 등의 위탁 사무 내용이 「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」 위탁 동의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.
- 지원 대상 기업의 성장 단계가 상이한 만큼,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연차별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동의안 제출 시에는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차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작성·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